

기업인권네트워크

■ 수 신 대표이사 이재성

■ 참 조 현대중공업 '대외협력실(지속가능보고서 담당)' 책임자, '안전경영' 관련 최고 책임자 및 실무자

■ 발 신 기업인권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국제민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좋은기업센터 /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 실무담당 및 연락처 : 김동현, 유정 02-3478-0529 dhkim@hopeandlaw.org, peterpan@action.or.kr

■ 제 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과 '산재안전'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

■ 날 짜 2014. 9. 29. (총 12페이지)

공 개 질 의 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환경, 지역사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대하고 있는 한국 NGO간의 네트워크이며, 노동건강연대는 산재추방 및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NGO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국내에 본사를 두고 주요한 사업장도 국내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에 기업인권네트워크가 관심을 갖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3.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선박 건조)부문을 담당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3사¹⁾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이슈는 각 사의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 지역사회 행정기관,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여러 문제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4월에는 단 두 달 만에 무려 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대형사고와 LPG운반선 건조장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562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5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6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3인의 질식사고,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인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대중공업 조선(선박 건조)부문 3사 지분율 및 최근 실적 (2014.4.1. 발행주식총수 기준, 공정위)

: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순서로 순환출자 지분구조이며 현대중공업이 기업집단(그룹)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세 기업의 사업부문 중 '조선부문'의 매출이 높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계열 3개 선박건조업체(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은 2012년 666만9천GT에서 작년 1천773만1천GT로 약 166%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 이미 618만1천GT를 수주함.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지분율 94.9%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지분율 45.2%
-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지분율 8%

■ 2014년 3월~4월, 현대중공업그룹 사내하청 노동자 작업중 8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현황²⁾

사업장	날짜	재해유형	원인	인명피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일주기업)	03.06	철판에 깔림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없음	사망 1명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대국ENG)	03.20	족장작업 중 추락	추락방지망, 안전가이드 미설치	사망 1명
현대중공업 (하청 선일ENG)	03.25	족장거치대 붕괴, 바다에 추락	족장을 거치대로 활용	사망 1명 부상 2명
현대미포조선 (하청 세현)	04.07	8.6m 아래로 추락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미설치	사망 1명
현대중공업 (HK, 지스콧)	04.21	LPG화물창 화재	화재방지조치 미실시	사망 2명 부상 2명
현대중공업 (하청 서운)	04.26	특수선 건조현장 샌딩작업중 추락	조사 중, 사망원인 논란 8월 경찰, 자살로 결론.	사망 1명
현대중공업 (하청 우성기업)	04.28	제4안벽 트랜스포트 신호작업 중 바다로 추락	약천후 야간작업, 안전조치 없음	사망 1명

4.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세계 1위의 기업으로서, 산재 발생 예방에 대해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중대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을 한 점도 높이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산재예방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산업안전관련 조치들의 내용이 적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내외하청 임직원 및 국내외 NGO,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발표한 여러 계획들의 상세한 내용들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최고경영자(CEO), 산업재해 혹은 안전경영 관련 최고 책임자 및 실무자, 지속가능경영 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보고서) 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본 질의에 대해 10월 20일(금)까지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질의1] 노사 각 10명 내외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 현황

현대중공업이 2014년 상반기에 처음 발행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이하, CSR보고서) 20페이지에 따르면, 귀사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 각 10명 내외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는 작업환경개선, 건강증진, 작업수칙,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발표한 '2013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13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협의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첨1] 참고)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술, 노동집약적 산업 안전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해 ZERO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생명지킴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안전 선진기업 진입 기반 구축'이라는 안전경영 추진 목표를 수립하여 예방, 실천하고, 더불어 협력회사 안전도 증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 각 10명 내외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건강증진, 작업수칙,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조찬회의와 사업본부 조찬회의를 통해 임원과 부서장들이 함께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등 재해 ZERO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 배포자료] 2개월에 8명 산재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책임자 정몽준 규탄 및 시장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_민주노총 2014. 4. 30

■ 2013년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2013. 12. 23)

No	안전	협의결과
1	관련자(관리감독자) 전원 징계 및 보직해임	- 산재은폐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보직해임 등)를 단호하게 조치한다.
2	산업재해자 징계금지	- 93 3/4분기 협의사항 준수한다. (재해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확실한 것만 징계)
3	전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 보건관리자명단과 사내하청업체 유자격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건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사내협력사 안전관리를 위해 조선사업부 안전요원 배치를 검토한다. 해양사업부는 기 시행중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이행요구	- 현업부서 작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장 내(팀-반사무실, 탈의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5	선박(엔진룸, 홀드)내 도장(그라인더) 작업시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	- 선박 내부(엔진룸, 홀드) 그라인더 작업시 최대한 환기장치(고정식 또는 이동식)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동되지 않는 집진기는 즉시 수리하여 사용토록 한다.
6	선박(엔진룸, 선실(D/H) 내 작업시 혼재 작업 금지 건	- 도장(그라인더) 작업은 퇴대한 타 작업과 분리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종료 후 각종 분진 등에 대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한다.
7	각 공장 유해위험 작업장(용접, 도장) 국소 배기 장치 설치 건	- 기존 보유중인 환기장치(이동식 환기팬, 집진기 등)를 최대한 가동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 설치는 동종사 벤치마킹 등 검토를 통해 조선 내업 부문에 시범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01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진행사항을 조합에 설명한다.)
8	야외 도장작업시 비산방지장치 설치건	- 블록 야외 도장작업은 최대한 비산방지망 설치 후 작업하도록 한다. - 선박외벽 도장 작업시 비산보호막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 연구 및 검토 후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9	2014년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결과 설명회	- 향후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조합도 참여한다.
10	법정보호구(12종) 전체에 대한 제품 점검	- 노사 실무 부서간 현장 조사를 통해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부서간 협의한다.
11	동절기 안전화 보온깔창 지급	- 노사 공동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효과에 따라 외업 직무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부서간 협의한다.
12	엔진조립 유압 작업시 보안면 개선 요구	- 노사 실무 부서간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제품을 지급한다.
13	신 외업2관(구, 선대) 의무실 설치건	- 향후 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재논의한다.

[1-1] 현대중공업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최근 활동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 등 주요 현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2013년 마지막 분기에 합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은폐로 인한 중징계 처리 건수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현황의 변화. 특히 사내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자 운영 현황 - 선박 내부(엔진룸, 홀드) 그라인더(도장) 작업시 환기장치(이동식 포함) 설치 현황 및 집진기 작동여부 점검 현황 - 선박 내부(엔진룸, 선실(D/H)내 그라인더(도장) 작업시 타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여부 현황 - 각 공장 유해위험 작업장(용접, 도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현황 및 오작동 점검, 교체 현황 - 법정보호구(12종) 전체에 대한 품질 점검 및 교체 현황 - '신 외업2관(구, 선대)' 등 의무실 이용시 거리가 멀어 불편한 사업장에 의료인원 및 시설 운영여부 및 운영 현황

[1-2] 또한, 2014년 상반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대규모 사업장 화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 안건들이 논의됐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올 해 1분기와 2분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로운 안건과 합의내용, 추진현황 등을 정리해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질의2] 5월에 발표한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및 3,000억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

SUSTAINABILITY REPORT
CORE ISSUE 2. 안전보건

현장 안전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5월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총 3,00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개선대책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을 통해 회사의 체제를 점검하고, 동시에 안전환경 조직강화, 협력회사 안전활동 지원 확대, 잠재적 재해요인 개선 등 세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4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3사에서는 무려 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했고, 선박 건조장에서의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점검을 받고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5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발표한 CSR보고서 23페이지에 따르면,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대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대략적인 내용 즉, '안전환경 조직강화', '협력회사 안전활동 지원 확대', '잠재적인 재해요인 개선' 등에 대해서는 CSR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귀사가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 | |
|---------------------|---------------------------------|
| 예를 들어) | |
| - 추진 목표별 장기 및 단기 계획 | - 추진 주체별 업무 계획 |
| - 추진 시기별 예산 사용 계획 | - 추진 영역별 파트너십 계획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 |

7. [질의3] 5월 시작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현대중공업 종합 진단 결과' 주요 내용 및 대응 계획

현대중공업이 올해 발표한 CSR보고서 23페이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을 통해 회사의 체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7월 13일 연합뉴스 기사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따르면, "현대중공업 측은 "잇따른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집단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탁했다"면서 "이달 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1]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종합 진단 결과'에서 '재해위험요인'으로 드러난 내용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3-2] _____, 안전보건공단의 진단 결과 드러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을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내하청 사측과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는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3] 만약, 안전보건공단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조사 주체와 조사 시기, 주요 조사내용, 후속 추진과제 등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4] 혹,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국내외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4] 위험과 재해의 전가,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은폐와 차별 현황

현대중공업은 무려 2000년 이전부터 2014년 5월까지 '산업재해 은폐'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고발당해 왔습니다. 과거 1999년에는 산재은폐가 적발되어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산재은폐를 이유로 당시 귀 사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20일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산재를 은폐해 2009년 152억원, 2011년 247억원, 2013년 184억원 총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연도별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은폐 현황 (1999년-2012년)³⁾

연도	주요내용
1999년	산재은폐 10건 적발. 안전경영대상 시상 취소
2001년	산재은폐 적발 32건 (노동부)
2002년	산재은폐 적발 4건 (노동부)
2003년	산재은폐 적발 3건 (노동부)
2004년	4월9일 현대중공업 유00씨 산재은폐 사업주 강요에 자살,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중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유서
2004년	9월 산재은폐 6건 고발
	10월 국정감사 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이사 증인 신문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자 4명 산재 은폐 인정 (7명인데 3명으로 축소 발표)
2012년	산재은폐 12건 고발
	9월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위해 트럭 후송하다 응급조치 미비 사망

※ 2001-2004년은 국정감사 자료 발췌, 그 이후 노조의 고발 건 외에 자료 확보 못함.



▲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일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4차 집단고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규동기자

이처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은폐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렇듯 은폐된 산재들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4차례에 걸쳐 집단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집단고발 현황

No	고발시기	고발 건수
1차	2013년 7월	40건
2차	2013년 10월	25건
3차	2013년 11월	66건
4차	2014년 5월	86건

또한,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직영 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영(정규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보도자료] 2013년 7월 5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_은수미 의원실

[4) 요약]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13년 재해건수 전년보다 69%↑ 올해도 4명 사망**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남.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 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 만에 69% 늘어남.

최근 3년간 현대중공업 직영 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2012년 193건(사망자 5명 포함)에서 2013년 187명(사망자 7명 포함)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4월 말 현재까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1명과 재해자 62명이 발생함. 반면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2012년 61건(사망자 4명 포함)에서 2013년 103건(사망자 1명 포함)으로 급증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주 산업안전실장은 "회사의 고용 유연화 전략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청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특히 해양사업부는 2천여명 정도였던 하청 노동자가 현재 1만5천~1만6천여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 사업부의 직영 노동자는 하청의 10% 수준인 1천800여명으로 작업량이 늘어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힘.

현대중공업 사측 관계자도 "작년 수주량이 대폭 늘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와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하창민 지회장은 "10일짜리 공사를 5일내 끝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잇따른 사고 이후 회사가 대대적인 안전조치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함.

이렇듯 현대중공업은 수주량 증가로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 비용이 저렴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하청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위험한 작업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노동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임금명세서조차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는 단 3.7%이며, 50% 이상은 공상처리 조치 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산재를 당한 피해 노동자 당사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례는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답변했고, 원청 즉 현대중공업의 압력에 의해 공상처리가 강요됐다는 답변도 2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5)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4년 3월11일- 3월23일
- 조사대상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400명
- 조사기관 : 하청 노동조합 공동조사. 분석 (주)동남리서치

2> 주요 결과

-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소지, 임금명세서조차 못 받는 경우도 있어
 - 몰랑팀, 일용직 노동자 44.4%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 임금명세서 받지 않는다. 24.2%
 -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중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70.4%
- (2) 산재처리 3.7%. 절반은 아무 보상없이 개인이 치료비 부담
 -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 처리 3.7%
 - 공상 처리한다. 43.7%
 -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50.4%
- (3) 산재처리 안 되는 이유 불이익 50.9%, 원청 압력 22.3%
 - 해고, 업체 폐업, 블랙리스트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 50.9%
 - 원청의 압력으로 업체에서 공상처리 강요 : 22.3%
 - 산재신청 정보 없어서 : 17%

4) [기사] 2014년 7월 13일,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5) [배포자료] 2개월에 8명 산재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책임자 정몽준 규탄 및 시장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_민주노총 2014. 4. 30

따라서 우리는 최근 급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고위험과 산업재해 발생,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여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1]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은폐를 이유로 고발당한 총 217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은폐'로 확정된 경우는 총 몇 건이며, 행정처분 받은 건 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책임자 처벌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2] 올해 5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노동건강연대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3~4월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숨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이재성, 김외현 대표이사), 현대미포조선(최원길 대표이사), 현대삼호중공업(하경진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 초 현재까지의 경과와 사내외 처벌 여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4-3] 현대중공업 CSR보고서 41페이지에 따르면, '협력회사까지 준법경영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실천수준 설문 조사 및 현장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 8개 계열회사의 협력회사 3,515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절차상 윤리수준, 임직원 윤리수준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에 사내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점검하고 있다면 점검 내용과 점검 주기, 점검 결과에 따른 포상 및 처벌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4]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대규모 제조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매우 많이 은폐되고 있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기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다양한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모두 '산업안전'관련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 그리고 예방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례가 반복되면 다시 말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면,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입은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점이 밝혀져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총 217건의 은폐된 산재가 고발되기도 했고, 중대재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은폐'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각 조치별 경과에 대한 내용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4-5]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과 시설 지원이 충분치 않아 2013년 말 열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된 물품과 시설의 '점검'과 '교체'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좀 더 위험한 작업을 좀 더 긴 시간 투입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들의 보호장구 지급과 안전 및 의료 시설 지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호장구 지급내역 및 교체주기 등 현황과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의 내역과 점검 현황,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인력의 배치 현황 등에 대해 정규직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6]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미비한 보호장구 지급 및 시설지원 부족'에 이어 '공사기간 단축 압박'을 꼽습니다. 이를 테면, '공정이 급하고 무조건 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산재예방을 위해 지

6)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가 없다'거나, '10미터 이상 높은 곳의 용접을 위해 계단을 설치해 줄 것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으로 요청하면, 원청 작업자들의 스케줄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신속히 계단을 설치 못한 상황에 정해진 공기 때문에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의 사례는 '무리하게 추진되는 짧은 공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만약 공기단축이 중요하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원청 작업자들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작업자들 간의 협업 및 의사소통'을 적극 독려한다면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선박 건조 사업장 내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서로 '안전을 위한 협업 및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는지, 혹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을 하는 원청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질의5] 산업재해 관련 정책 및 성과의 정기적인 보고여부 및 공개여부



현대중공업 CSR보고서 20-25페이지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소개된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현황, 향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아 노조, 지역사회, 국회, 고용노동부, 언론, 시민단체, 투자자 등 현대중공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의 '사업장 안전 및 위험'과 관련된 자세한 현황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연도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04년-2013년⁷⁾)

날짜	피해인원	개요
2004년 1월 3일	1명	피스톤 탑재작업 중. 지그 변형 낙하. 머리에 맞고 사망.
2004년 1월 11일	2명사망 3명부상	족장 핸드레일에 바스켓 걸려 추락
2004년 1월 12일	1명사망	탱크내부압력으로 커버 튕겨져 하복부 맞아 사망
2004년 2월 21일	1명부상	슬라이딩 도어 인양작업중 도어에 부딪쳐 부상. 신장파열
2004년 6월 30일	1명사망	사일로 상부 세척작업중 추락사망
2006년 1월 13일	1명사망	블록전도로 추락 사망
2006년 3월 31일	1명사망	골리앗 크레인 이동 중 충돌 웨이트 꺾여 추락사망
2006년 4월 15일	1명사망	가설제작중 이동하다가 실족 사망
2006년 6월 23일	1명사망	공장내 설치된 오수관 부딪쳐 사망
2006년 8월 30일	1명사망	이동중인 부재와 바닥에 적치된 부재 사이에 끼어 사망
2006년 12월 16일	1명사망	추락사망
2007년 3월 28일	1명사망	LPG선 화재 질식사망
2007년 4월 16일	1명사망	건설장비 2공장 협착 사망
2007년 5월 24일	1명사망	5월7일 추락 24일 사망 동쪽 EP장
2007년 7월 17일	1명사망	미포만 압착 사망
2007년 7월 28일	1명사망	엔진주조공장 추락사망

7) [] 2014년 4월 30일, 2개월에 8명 산재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책임자 정몽준 규탄 및 시장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_민주노총

2007년 9월 20일	1명사망	후진하던 트랜스 포터 바퀴에 깔려 사망
2007년 9월 15일	1명사망	그라인더 작업 도중 블록밑에 깔려 사망
2007년 9월 20일	1명사망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 사망
2008년 3월 10일	1명사망	굴삭기 토공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 사망
2008년 4월 22일	1명사망	족장해체 작업중 추락 사망
2008년 12월 8일	1명사망	추락방지망 점검중 추락 사망
2009년 10월 10일	1명사망	고소차 붐대에 협착 사망
2009년 10월 13일	1명사망	용접부 끝부분 탬피스 절단작업중 폭발. 사망
2009년 11월 11일	1명사망	설비라인 해체작업중 엘보가 빠지면서 가슴에 맞아 사망
2010년 2월 3일	1명사망	정반 이송작업중 협착사고 사망
2011년 3월 16일	1명사망	도장 터치작업위해 이동중 미끄러져 후두부 부딪쳐 사망
2012년 5월 30일	1명사망	파이프 내부 용접 점검 작업중 사망
2012년 7월 2일	1명사망	마그네트 크레인 이용 작업중 포트에 맞아 사망
2013년 2월 13일	1명사망	족장설치 작업중 쓰러져 사망

[5-1] 그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의 목표, 추진주체 및 조직, 소요 예산 등 정책별 '주요 내용'과 실행 주기, 외부 전문가 참여여부, 전반적인 평가, 성과의 변화, 향후 계획 등 '운영 현황'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규직(원정) 노동자'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별로 구분해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 | | |
|-------------------|-----------------------|
| 예를 들어) | |
| - '전사 재해방지시스템 운영'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 - '해양오염방지대책 운영' | - '마음정원' |
| -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 - '협력회사 안전활동 강화' |
| - '건강증진센터 운영' | - '기업 Slow City 운동' |
| - '소음성 난청 예방' | - '안전체험관 운영' |

[5-2] 현대중공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은 정규직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추진해야 정책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내용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어떤 형식과 주기로 공유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 불만 및 수정사항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피드백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6] 6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3인의 질식사고,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인의 사망사고 이후 최근까지의 경과

지난 3-4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3사에서는 무려 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선박 건조장에서의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5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발표 직후인 6월에 질식사고로 인한 6명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고, 8월엔 사망사고로 인한 1명의 사망자가 뒤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⁸⁾ 요약]

6월 10일, 현대미포조선 툴루엔에 중독된 노동자 3명 중태 도장 작업하다 중독돼 질식, 동일작업 하던 4곳 작업중지 명령

6월 10일 밤 9시 51분경, 현대미포조선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툴루엔(신나 주성분) 중독으로 질식해 쓰러짐. 이들을 구조하던 3명과 함께 총 6명(재해자와 구조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세방기업)은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됨. 이 중 구조자 3명은 11일 오전 모두 퇴원했으나 재해자는 박 모씨(여, 59), 최 모씨(여, 57), 황 모씨(남, 57)다. 재해자 가운데 2명은 간, 신장,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신장 투석과 산소를 투여하며 치료중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또 전날 진행한 스프레이 도장이 건조되기 전에 투입됐고, 마스크나 방독면 등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거나 불량한 상태였다고 함.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진행됨. 사고가 발생한 붓(브러쉬)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로 도장한 것이 건조된 뒤 진행돼야 함. 하지만 이들은 스프레이 도장이 건조되기 전에 도장 작업에 투입됨. 또 방독면을 착용했으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노동지청은 사고 선박과 동일작업을 하는 선박 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림.

[관련기사⁹⁾ 요약]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구조물 사이에 쓰러져 발견... 울들어 하청 사망만 9명

23일 오전 8시 50분께 현대중공업 변압기 생산부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T산업 소속 조모 씨(46)가 조선소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인근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1시간여 심폐소생술 끝에 사망함.

따르면 숨진 조씨는 T사의 팀장급 관리자로 업무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6시에 출근해 왔으며, 이날도 조씨는 오전 6시에 출근한 것이 확인됨. 조씨는 관리자라서 직접 작업공정에서 일하진 않지만 작업 시작 훨씬 전부터 출근해 도면을 들고 현장을 다니면서 전날 작업한 부분을 체크하고,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 옴.

숨진 조씨는 일찍 나와 당일 작업 현장을 점검한 뒤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구조물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검안에 참여한 동료들에 따르면 조씨의 눈 주위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과 무릎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쓰러진 조씨 주변엔 조씨가 들고 갔던 도면도 확인됨.

병원은 조씨가 일단은 급성 심혈관계쪽의 문제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씨가 쓰러질 당시 목격자는 없었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특히 이번 조씨의 죽음은 목격자도 없어 사인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고 함.

이처럼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1] 6월 질식사고 후 피해자들의 산재처리, 치료, 보상, 복직,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책임자 처벌 등 최근까지의 경과를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8월 사망사고 후 산재처리, 사망원인 조사결과, 보상 여부 등의 내용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5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이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의 처리경과는 이전의 처리 관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8) [노동과세계] 현대미포조선 툴루엔에 중독된 노동자 중태 2014. 6. 14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341>

9)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구조물 사이에 쓰러져 발견... 울들어 하청 사망만 9명 2014. 8. 25 <http://www.usjournal.kr/News/60884>

12. [질의기] CSR보고서 중 '인권', '노동', '사회' 지표의 보고내용 추가

업종의 특성상 '작업 중 재해발생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사는 다른 업종의 CSR보고서 보다 '인권', '노동', '사회' 영역의 몇몇 지표는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발행한 귀 사의 CSR 보고서에서는 꾸준히 제기된 '산업재해'와 '은폐', '사내하청 노동자' 등을 둘러싼 보고내용은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7-1] 사가 발행한 CSR보고서의 보고양식으로 채택한 'GRI 3.1' 중 '인권', '노동', '사회' 영역 중 아래 항목에 대한 내용을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추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표 구분		내용		
노동	직 보 안 장 건 전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업무 관련 재해건수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위험관리 프로그램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안전사항	
인권	투 자 와 조 달 관 행	HR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주요투자협약 건수와 그 비율	
		HR2	주요 공급/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일수	
	차별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단 체 교 섭 의 자 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제노동	HR7	강제 노동 발행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보안관행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평 가	HR10	인권 감독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개 선	HR11	불만전달 매커니즘을 통해 소송제기, 대응, 해결되는 인권 관련 불만사항의 수	
	사회	법규준수	SO8	비금전적 제재 건수
		지 역 사 회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SO10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적 혹은 실제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예방 및 완화수단	

7. 위의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 사의 검토결과를 2014년 10월 20일(월) 오후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사가 보내주신 답변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현 대중공업 투자 기관들과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 면 회 신 : (우) 120-7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합동) 충청로대우디오빌 10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17 충청로대우디오빌 1030호
희망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메일 회신 : dhkim@hopeandlaw.org, peterpan@action.or.kr
- 회 신 문 의 : (02) 364-1210, 010-8228-9308

- 끝 -

[별첨1] 2013년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2013. 12. 23)¹⁰⁾

2013년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일자 : 2013.12.23

순	노동조합 요구 사항			협의 결과
	안 건	문 제 점	개 선요 구안	
1	산재은폐 관련자(관리감독자)전원 징계 및 보직해임	산재해해를 은폐한 관리자에 대한 재재가 미미하므로 인해 산재은폐가 만연함	산재은폐자 징계 및 보직해임 등 강력한 조치로 산재은폐 근절	-산재은폐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보직 해임 등)를 단호하게 조치한다
2	산재해해자 징계금지	조합원이 산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회사의 징계로 인해 이종고를 겪고 있음	산재피해자가 징계로 인한 이종고를 겪지 않게 징계 상정금지(무과실 책임주의)	-'93년 3/4분기 협의사항 준수한다 (재해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확실한 것만 징계)
3	전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명단과 사내하청 업체 유자격 안전 보건관리자 배치건	현장 작업자에 비례한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사내하청 업체의 자체 안전보건관리자가 없어 하청 업체의 산재 발생률이 높음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과 사내 하청업체 안전 보건관리자 배치요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사내협력사 안전관리를 위해 조선사업부 안전요원 배치를 검토 한다. 해양사업부는 기 시행중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등)이행요구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중요한 내용은 작업자가 잘 보이는 곳에 공지해야 함에도 지켜 지지 않고 있음	법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작업장 내 보기 쉬운 장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작업장, 선박내 등에 부착요구	-현업부서 작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장 내(법·반사무실, 팔의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5	선박(엔진룸,홀드) 내 도장(그라인더) 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결정	선박(엔진룸,홀드) 등 그라인더작업시 집진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작업시 집진기 설치를 하고 작동되지 않는 집진기는 교체요구	-선박 내부(엔진룸,홀드) 그라인더 작업시 최대한 환기장치(고정식 또는 이동식)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동되지 않는 집진기는 즉시 수리하여 사용토록 한다

순	노동조합 요구 사항			협의 결과
	안 건	문 제 점	개 선요 구안	
6	선박(엔진룸, 선실(D/H)) 내 작업시 혼재작업 금지 건	선박(엔진룸),선실(D/H) 작업시 의장, 도장(그라인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 작업장 공기가 아주 혼탁함	도장(그라인더)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 실시하고, 작업후 분진과 쓰레기를 확실 하게 제거할 것	-도장(그라인더) 작업은 최대한 타 작업과 분리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종료 후 각종 분진 등에 대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한다
7	각 공장 유해위험 작업장(용접,도장) 국소배기장치 설치건	공장내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제대로 환기되지 않음	국소배기장치 설치로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	-기존 보유중인 환기장치(이동식 환기팬, 집진기 등)를 최대한 가동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트팬 설치는 동종사 벤치마킹 등 검토를 통해 조선 내업부분에 시범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201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진행사항을 조합에 설명한다) -도장 작업장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펠터는 교체한다
8	야외 도장작업시 비산방지장치 설치건	블록 및 선박외벽 도장(스프레이) 작업시 비산방지막 설치가 되지 않아 사업장은 물론 동구지역 전체가 페인트 분진에 노출됨	도장작업시 보호막 설치로 조합원 및 동구 주민의 건강 및 재산보호	-블록 야외 도장작업은 최대한 비산방지막 설치 후 작업하도록 한다 -선박외벽 도장 작업시 비산보호막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 연구검토 후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9	2014년 안전보건 규칙 제657조 유해 요인조사 결과 설명회	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3년주기로 실시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유해요인조사가 2013년에 실시되지 않았 다면 2014년도에 실시하여 작업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향후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조합도 참여한다

10)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hhiun.or.kr/Sanan/51577>) >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순	노동조합 요구 사항			협의 결과
	안 건	문 제 점	개 선요 구안	
10	법정보호구 (12종) 전체에 대한 제품 점검	안전화, 마스크, 보안경 등 제품 품질 불만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따름	법정보호구 점검과 품질개선 요구	-노사 실무 부서간 현장 조사를 통해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부서간 협의한다
11	동결기 안전화 보온칼창 지급	현재 지급되는 안전화는 동결기 작업시 추위로 인해 작업능률 저하는 물론 발가락 동상위험	동결기 안전화 보온칼창 지급으로 발시림 방지	-노사 공동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효과에 따라 외업 직무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부서간 협의한다
12	엔진조립 유압 작업시 보안면 개선 요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성능 및 품질이 떨어져 작업시 불편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에 노출됨	제품의 성능, 품질 검사를 통해 작업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	-노사 실무 부서간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제품을 지급한다
13	신 외업2관 (구. 선대) 의무실 설치건	2도크, 도장4, 5, 8공장 주변에서 작업 하는 조합원들의 의무실 이용시 거리가 멀어 불편함	신 외업2관(구. 선대) 건물에 의무실 설치할 것	-향후 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재 논의한다